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방송법 <2008.2.29>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신설 2007. 1. 26>

제42조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7. 1. 26>

제42조의3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으로 한다.

③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그 밖에 지역방송의 범위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 1. 26>

제42조의4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지원정책의 심의
2. 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3. 지역방송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4.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07. 1. 26>

방송법 시행령 <2008.2.29>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신설 2008. 2. 22>

제25조의2(지역방송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한다.

1.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
2. 특별시 외의 지역 <본조신설 2008. 2. 22>

제25조의3(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42조의3 제3항에 따라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이하 “지역방송대표단체”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지역방송대표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대표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3명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자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를 위하여 매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활동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2. 2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08.5.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2 내지 4와 동법시행령 제25조의3제5항에 의하여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2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제3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2인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위촉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대표단체로 고시된 단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중 위촉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 지역방송대표단체로 고시한 단체는 이 법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1인 이상 추천할 수 있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대표단체의 위원 후보를 추천받은 후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을 선정, 위촉해야 한다.

제4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자격)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1.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교육·문화계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시청자·시민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기타 지역방송 관련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 친족관계에 있던 자가 해당 사안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에 있는 경우

3.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해 사안의 당사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은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 ①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②제①항에 의한 회의 개최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하고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④지역방송발전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회의와 관련된 행정사무는 위원회 사무조직이 한다.

제7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대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청취) ①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법 제42조의4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방송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 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 및 관련 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①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 ①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분과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외부전문가의 분과위원 위촉시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의뢰한 의안 검토
2.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의뢰한 사항 검토

제13조(분과위원회 회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제5조, 제6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 제9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방송대표단체에 관한 고시 <2011. 9. 7.>

지역방송대표단체에 관한 고시

방송법 제42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 할 수 있는 지역방송대표단체의 부문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단체 부문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 중 지역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지역방송국을 대표하는 단체(한국방송공사 계열, 문화방송 계열, 지역민영방송 계열, 독립라디오 방송 계열 중 2개 이상 계열을 대표할 것)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할 것

2. 학술단체 부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방송 또는 언론관련 연구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방송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단체 일 것

3. 비영리민간단체 부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방송 또는 언론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할 것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